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0. 2. 5.
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안대국 의원 외 5인(이성순, 서민우, 박종길, 윤권근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19. 11. 25.
- 회부일자: 2020. 1. 23.
- 상정 및 의결: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2. 5.)

### 2. 제정이유

-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,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,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신청, 환수 (안 제4조~안 제8조)
- 다.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10조)
- 라. 포상(안 제12조)

### 4. 관계 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및 제10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동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저출산·고령화 추세로 인해 야기되는 “인구 및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”하려는 취지 (안 제1조)에서, 달서구에 거주하는 ‘다자녀가정’(안 제2조제1호)의 자녀 중, 세 번째 자녀(첫째, 둘째 자녀는 제외)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(안 제5조), 1회(입학년도 한해)에 한해 2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(안 제6조)하는 한편, 동 다자녀가정이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, 이용료 일부를 감면(안 제4조제2호)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출산 장려를 통한 노동 인구 확대로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는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,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방식(정책)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 사료됨.

### ① 출산 장려 정책 효과의 한계성 여부.

‘다자녀가정’의 세 번째 자녀에 한해 중학교 입학 시, 1회 20만원 지원은 결국 세 번째 자녀가 최소 13세 이하가 될 때까지 구에 거주하든지, 또는 타 지역에서 다자녀가정을 이룬 후 세 번째 자녀의 중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구로 전입토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 바, 이는 조례 제명(題名)에 포함된 ‘출산 장려’와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를 얻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.

### ② 셋째 자녀, 중학교 입학 시 1회 한정 지원의 적절성 여부

최근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, 지난 3년(2016년~2018년) 달서구 거주 3자녀(이상) 가구 자체가 매년 350여 가구씩 수준 감소 추세. 동 현실(및 향후 다자녀가정의 지속적 감소 현상)을 고려할 때, [셋째 자녀 중학교 입학 시]로 굳이 한정할 실익은 없다고 사료 됨. 일례로 [셋째 자녀 유치원 입학 시]로 한정하더라도 [1회에 한해 지원하기에] 구 예산 부담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.

### ③ 지원 대상자 선정 시, 최소 거주 기간 미 규정의 적절성 여부

현재 달서구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<출산축하금>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를 “~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

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~(제3조)"로 하여, 구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조례안에는 "~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~(안 제5조)"로 하여 최소 거주 기간 제한이 없는 바, 최소 거주기간을 규정함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.

#### ④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

현재 대구광역시와 시 교육청에서도 '다자녀가정'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비(학자금)지원을 하고 있는 바, 중복 지원 가능성 여부(특히 시 교육청 조례 제4조제2항 참고)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.

### 6. 질의 및 답변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### 7. 토론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